

## ▲ 재심 2010-1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10년 5월 31일자 3면「정운천 후보 부인 최경선 여사 글 '화제'/'쌍발통뉴스'에 편지글…남편 출마에 인간적 고뇌 담아」제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33차 회의(6월 30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전북도민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귀 위원회는 이 기사의 출처가 정운천 후보의 선거 홍보 사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선거 홍보 사이트인 쌍발통 뉴스뿐만 아니라 전북도청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었던 글입니다.

본보는 야당 도지사가 재직한 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그것도 여당후보 부인의 편지글이 올라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선거 홍보 사이트인 쌍발통 뉴스의 조회가 400명에 달했지만 도청 홈페이지 조횟수도 100회 이상이나 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편지글 이 회자되면서 화제성 기사로서 밸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 홍보 사이트에 실은 편지글이라 보도 가치가 있는 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판단했으나 도청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편지글의 내용 중에서 후보자의 부인이 지역정서상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돕기 위해 평생 봉직해온 교직을 그만 두었다는 부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뇌를 해왔으며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친정아버지께서 운명을 하시며 남긴 너는 이제 전라도에 뼈를 묻어야 한다. 잘하거라는 유지를 받들어 남편의 고향인 전북도를 위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독자들에게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봤고 후보 부인들 또한 취재대상입니다.

또한 작지 않은 크기의 박스 기사로 다루고 같은 면의 다른 기사들과 차별 되게 엶은 바탕색을 사용해 편집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를 거둬 특정후보 진영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고 편집된 기사라 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단 정운천 후보 부인의 선거운동 활동 상황뿐만 아니라 타 후보 부인들의 선거운동도 수시로 취재 보도(관련 자료 첨부) 했기 때문에 특정 후보 진영에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 것은 아닙니다.』

2. 위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도민일보는 당해 기사가 다룬 정운천 후보 부인의 글이 선거 홍보 사이 트 뿐만 아니라 전북도청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었고, 야당 도지사가 재직한 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그것도 여당후보 부인의 편지글이 올라있다는 것자체가 화제가 될 수 있다고 봤으며, 도청 홈페이지 조회 수도 100회 이상이나 되는 등 화제성 기사로서 밸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도청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글이 아닌 이상 거의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선거기간에는 도청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정 후보 부인의 글이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실렸다는 사실이 특별한 뉴스거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글이 정 후보의 선거홍보 사이트에 함께 실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 후보 진영에서 도청 홈페이지까지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올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경우 경계하는 자세로 대응하는 게더욱 공정한 자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북도민일보가 이 글을 도청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취재했다는 설명은 기

사에 100명 이상이 조회했다는 기술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전북도민일보는 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인이 오래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는 고뇌와 친정아버지의 유언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당사자인 정 후보나 그의 부인은 당선의 가능성 이외에도 신념, 또는 차후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정치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힘든 결정 을 내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 후보 부인의 그러한 결정도 다른 정치인 부 인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신문은 '6·2지선 도지사를 말하다'라는 기획물을 연재하면서 5월 12일자에 제일 먼저 정 후보를 다루었는데 관련 기사인 '부인에게 듣는다'를 통해 부인이 교직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이미 보도했다.

즉 이 기사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 것은 다른 후보와 결과적으로 차별되는 혜택을 준 조치다.

전북도민일보가 정 후보의 선거를 돕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보도는 관점이다른 독자에게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은 보다 신중한자세로 입했어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민일보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심 2010-2 신문윤리강령 위반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안 형 순

### 〈주 문〉

강원도민일보 2010년 10월 2일자 3면 「검은 모래·탄광··· 폐광지서 즐기는 이색 골프」제하 기사, 10월 9일자 3면 「탁 트인 코스··· 골퍼 위한 쾌감 충

### 32 재심

전소」제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36차 회의(10월 27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 1. 강원도민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본지가 지난 2010년 9월 11일자부터 매주 토요일 연재하고 있는 '명품 골프장을 가다' 시리즈 가운데 10월 2일자와 10월 9일자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 면을 할애해 특정 골프장의 입지, 코스, 시설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은 기사들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지면을 제작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가운데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3. 본지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역과 밀착된 지면제작을 위해 토요일자 신문에 레저소식을 1면에 과감하게 게재하는 획기적인 편집을 시도하고 있습 니다. 1면에는 매주 강원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축제와 관광명소 등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4.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세밀하게 소개하기 위해 토요일자 2 면과 3면도 같은 개념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품 골프장을 가다' 시 리즈 직전에 같은 면인 3면에 '강원의 명산' 시리즈를 120회 넘게 연재하였습 니다. 100회가 넘는 연재로 소재가 고갈되면서 새롭게 시작한 시리즈가 바로 '명품 골프장을 가다'입니다.
- 5. 골프장 시리즈는 골프의 대중화로 도내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골프클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시점에서 도내 골프장을 소개해 주기 위한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6. 도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없애고 향토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지인들에게는 도내에 이 같은 훌륭한 골프장이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하기 바란다는의도로 제작하고 있는 골프장 시리즈를 통해 도내 골프클럽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7. 이처럼 본지가 토요일자에 여가와 레저를 강조하는 지면을 제작하는 것은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언론 역할 못지않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향토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8. 본지도 계획단계에서 이 같은 시리즈가 자칫 특정 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는 역기능에 대해 우려를 했지만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향토기업으로서의 정착 등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해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9. 본지는 11월 13일자까지만 골프장 시리즈를 게재하고 잠정 중단한 후 11월 20일자부터는 도내 스키장과 콘도를 소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도내 향토기업을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10. 본지가 이 같은 시리즈를 시작한 후 중앙일보 등 일부 중앙지도 본지와 같은 형식으로 특정 골프장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1. 이 같은 이유로 재심의를 신청하니 본지의 근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위 청구 사유에서 지역과 밀착된 지면 제작을 위해, 도민들의 여가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세밀하게 소개하기 위해 주말 3면에 '명품 골프장을 가다'라는 기획을 진행하면서 상기 기사를 싣게 되었고, 또 골프의 대중화로 도내 골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골프클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점이라이 기획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신문은 "도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없애고 향토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

지인들에게는 도내에 이 같은 훌륭한 골프장이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하기 바란 다는 의도로 제작하고 있는 골프장 시리즈를 통해 도내 골프클럽의 활성화에 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을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향토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는 도내 골프장들을 소개하는 것이 도민들의 위화감을 없애고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다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지역 신문들 가운데 골프장을 소개하지 않는 신문은 주민의 풍요로운 여가생활과 지역 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중 앙지들도 국민의 여가생활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전국의 골프장들을 소개하 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신문은 상기 기사들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 골프장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자들이 해당 골프장들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당 골프장의 실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기사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강원도민일보의 위 연재 기사들은 대중의 여가를 위한 시설의 '소개' 내지 '정보 제공'이라는 의도보다는 '도내에 이 같은 훌륭한 골프장이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하기 바란다는 의도'에 무게를 두고 작성됐다. 즉 강원도민일보는 "이 골프장 시리즈를 통해 도내 골프클럽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부한 다"고 밝힘으로써 이 시리즈가 강원 도내 골프장들의 홍보와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획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축제, 관광명소, 명산 등을 소개하는 것과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축제, 관광명소, 명산 등을 소개하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도내에 산재한 골프장을 소개하는 것은 특정 사기업의 영리를돕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신문의 향토지로서의 역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

실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신문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그 러한 지면 제작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신문윤리강령의 취지라고 본다.

따라서 강원도민일보의 위 재심 청구는 원 결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심 20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南日報 발행인 박 경 엽

### 〈주 문〉

全南日報 2010년 10월 12일자 16면「중원 장악하라 이청용에 특명」제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36차 회의(10월 27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 1. 全南日報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全南日報 2010년 10월 12일자 16면에 개재됐던 이청용의 사진은 지난 5월 16일 뉴시스의 자료사진을 게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아울러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연합뉴스의 사진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주의 조처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결정이기에 정정을 바랍니다.
- 3. 사진 변형의 건(머리카락)은 편집상 기교로 이미지를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 4.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진 설명이 없이 이미지만 차용한 경우로 편집상 타 신문도 통상적으로 같은 사례임을 밝힙니다.』

36 재심

2 위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南日報는 위 재심 청구 이유에서 동 신문이 해당 기사에서 뉴시스의 사진을 게재하였음을 밝혔고, 사진을 변형한 사실도 인정하였으며, 사진을 변형한목적은 편집상 기교로 이미지를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사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진 설명이 없이 이미지만 차용한 경우로, 이런 경우 편집상 타신문도 통상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신문윤리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뉴시스를 연합뉴스로 오기한 것은 명백한 실수이며, 따라서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신문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해당 결정문 내용 중 '연합뉴스'를 '뉴시스'로 바로잡았음.)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 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린 이유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全南日報는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과 사진을 변형한 것은 이미지 변형을 위한 통상적인 편집상의 기교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해 기사는 그날 오후에 있을 예정이었던 한일전을 앞두고 면 톱으로 올린 기사다. 스트레이트 뉴스와 해설을 겸한 기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상 편집상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자료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기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픽 처리를 하여 함께 게재하기도 한다. 이때 자료사진의 경우 〈자료사진〉으로, 또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찍은 사진임을 사진 설명으로 밝히고, 그래픽 처리를 한 경우는 〈그래픽〉 또는 〈그래픽 =OOO기자〉 등으로 명기하는 것이 상례다. 이는 기사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이트 사진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이다.

그러나 全南日報의 위 사진은 10월 12일 오후에 열릴 경기를 미리 보도하면서 5월 16일자 뉴시스 자료사진을 사용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은 물론 효과적인 편집을 위해 보정 작업을 했다는 설명도 없었다.

따라서 문제의 사진은 효과적인 편집 작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5월 뉴 시스가 제공한 인물 사진을 가져다 쓰면서 배경을 지우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을 세밀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워 머리카락의 가장자리만 트리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편집상 기교로 이미지를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全南日報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도 사진을 변형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은 '편집의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조작기법을 사용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全南日報의 위 재심 청구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심 2011 - 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라일보 발행인 강 만 생

### 〈주 문〉

한라일보 2010년 12월 3일자 9면「세컨샷 주변 투온 저지용 암석원 감상 묘미도/엘리시안 레이크6·파인8번홀」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 838차 회의(12월 22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한라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지는 제주지역 20여개 골프장의 특징 등 관련 정보를 골퍼 관광객과 도내 골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우리 골프장 명·난코스"란을 신설해 제주지역 모든 골프장을 순회하며 2010년 7월 23일부터 격주 1회씩 연재하는 형식으로 균형감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귀 위원회의 판단과는 보도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사료돼 재심의를

38 재심

신청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2. 위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라일보는 위 청구 사유에서 제주 지역 20여개 골프장의 특징 등 관련 정보를 골퍼 관광객과 도내 골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우리 골프장명·난코스' 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는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모든 골프장을 순회하며 격주 1회씩 연재 하는 형식으로 균형감을 갖고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일보는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특정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위원회의 판 단과는 보도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제주 지역의 특정 골프장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골프장을 균형있게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라 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단정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한라일보의 설명대로 제주 지역의 골프장 관련 정보를 주로 외지인인 골퍼 관광객은 물론 도내 골퍼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 시리즈를 기획했다는 의 도를 부정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지면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객관성·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제838차 회의에서 지적된 '엘리시안 레이크6·파인8번홀' 기사 내용을 보자. 『울창한 숲속 정원 같은 코스로 유명한 엘리시안컨트리클럽 제주. 코스를 감싸고 있는 오름들은 여름에는 시원함을 제공하고 겨울엔 천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준다.

◆명품홀= 엘리시안제주의 레이크 6번홀은 오르막성 우측 도그레그 거리

가 다소 짧은 450m 파5홀로 장타자는 쉽게 투온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버디나 이글을 욕심낼만하다. 거리상 투온이 가능하나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크릭(Creek)이 묘하게 자리잡고 있어 자신에 맞는 루트 설정이 필요하고, 세컨 샷 주변의 암석원이 투온 저지용 및 시각적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전략적 코스다.

연못, 제주석, 잔디, 벙커가 각자의 독특한 색상으로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크릭에서 흐르는 생동감 있는 물소리와 시크릿 가든처럼 암석원의 제주석 사이에서 계절별로 피어오르는 제주야생화가 곱다.

파5홀에 비해 코스거리가 다소 짧아 공략이 편안하고 묘한 위치에 크릭이 놓여 있어 장타자에게 매우 유리한 코스이다. 페어웨이 중간에 흐르는 계류 및 거대한 돌무더기가 제주만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퍼들은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온 거리가 200m이내로 짧다고 하지만 오르막이면서 그린주변에 크게 입벌린 벙커가 있고 조금 길게 쳤다 싶으면 그린을 훌쩍 넘어가 버려 대략 난감한 일이 벌어지곤 한다. 욕심내지 않고 우드로 티샷한뒤 100m 남는 지점까지 보내고 가볍게 피칭웨지로 홀컵에 붙여 버디를 잡는다면 다음 쇼트홀로 이동하는 동안 기분이 상쾌해질 것이다.

◆난코스= 파인 8번홀은 오르막성 티샷후 세컷샷은 5m 오르막으로 공략해야 되는 385m 파4홀이다. 위험부담과 경기에 유리함이 공존하는 전략적인 홀이다. 길이 200m의 연못이 좌측에 길게 누워있어 티샷의 베스트는 IP좌측이나 물을 피해 IP우측으로 공략할 경우 세컨샷시 그린의 방향뿐 아니라 그린 오른쪽의 벙커가 크게 저항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상급자는 페이드볼을 구사해야 하고 하급자는 쓰리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티샷의 베스트는 IP 좌측이나 투온을 노리고 온그린을 시도한다면 심각한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세컨샷은 벙커를 주의하고 그린뒤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조금 길게 공략하거나 쓰리온을 생각해 그린 좌측으로 레이업 한다면 조금은 쉽게 홀아웃 할 수 있다.

이 코스에 대해 골퍼들은 위험부담과 경기에 유리함이 함께하는 홀로 좋은 샷을 구사하는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핸디캡 1번 홀로 평가한다. 욕심냈다

간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기 쉽다는 얘기다.』

소위 '명품홀'과 '난코스' 두 개 홀을 소개하는 본 기사는 '울창한 숲속 정원 같은 코스로 유명한 엘리시안컨트리클럽 제주. 코스를 감싸고 있는 오름들은 여름에는 시원함을 제공하고 겨울엔 천혜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준다.'로 시 작해 '연못, 제주석, 잔디, 벙커가 각자의 독특한 색상으로 색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페어웨이를 가로지르는 크릭에서 흐르는 생동감 있는 물소리와 시크 릿가든처럼 암석원의 제주석 사이에서 계절별로 피어오르는 제주야생화가 곱 다.' '페어웨이 중간에 흐르는 계류 및 거대한 돌무더기가 제주만의 색다른 볼 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골퍼들은 평가하고 있다.' 등의 기술로 이어진다.

또 「부부회원 한달새 나란히 홀인원」이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에서는 이 골 프장에서 개장 이래 홀인원한 사람의 수를 밝히면서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 별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어 '3개의 회원제 코스 27홀과 퍼블릭 코스인 오션 코스(파 36·3593야 드) 9홀 등 36홀 코스는 기존 자연 수림대가 최대한 보존된 한편 각각의 코스는 이름처럼 각기 다른 색채로 마무리 돼 숨막힐 듯한 자연미를 뽐낸다고 클럽측은 자부하고 있다.' '파인 코스는 제주도의 자생 수림이 코스에 널려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캄포 코스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초원이 펼쳐진 듯한 광활한 코스로 색다른 제주의 자연미를 물씬 느낄 수 있으며 오션 코스는 아름다운 제주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의 표현으로 이 골프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별도의 기사에서는 이 골프장의 '베스트 도우미'의 말을 빌려 "최고 급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각종 세미나나 연회장으로 각광받고 있는가 하면 여름에는 하계비치캠프도 운영돼 이용객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자랑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보는 독자들이 이것은 단순한 객관적 정보 전달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면에는 그밖에 이 골프장의 취약점,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 골퍼들의 긍정적 · 부정적 평가 따위에 대한 기술은 아예 없다.

이처럼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도 골프장 측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객관적인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해당 업체의 여러 면모를 긍정 일변도로 서술하고 나아가 골퍼들의 골프장 방문을 은연중 권유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획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기사는 해당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가 아니냐는 독자의 의구심을 살 수가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사명으로 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지면 제작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신문윤리강령의 취지라고 본다.

따라서 한라일보의 위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